

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임진각 관광지내의 통일연못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「통일기원 무궁화 꽃등 띄우기」 관광 상품을 개발,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관광 파주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무궁화 꽃등 띄우기 사용료를 1,000원으로 정함. (안 제5조, 별표2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임진각 관광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통일연못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「무궁화 꽃등 띄우기」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- 다만, 지난 11월 17일자 경인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보면 동 시설사용료 징수에관한조례 승인없이 사용료를 징수함은 물론 꽃등이 연못의 흐름을 가로막아 물의 회전이 안되는등 결함이 발견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, 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지 방 자 치 법

제 127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지 방 자 치 법

제 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 ①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